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
----------	----

제안년월일 : 2003. 4. 1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내·외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과 별표 8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 1. 1일 이후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여비기준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2002. 1. 4일 국내여비, 2003. 1. 7일 국외여비)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의 비고3” 및 “별표 8의 비고2”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용어를 공무원국내여비정액표와 맞게 정비(현지교통비 → 일비, 숙박료 → 숙박비)하고 1야당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인상함.(안 별표1)
-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공무원국외여비정액표에 의거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신설함.(안 별표2)

## 3.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관련법규 발췌 : 불임.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숙박비(1야당)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는 2002. 1. 4일부터,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2003. 1. 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미불화)

지급 기준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 부의 장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1등 정액	40	가등급 205 나등급 149 다등급 118 라등급 100	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	150	180	210
의 원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 정액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 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국가 및 시도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에 의거 지급한다.

## 신 구조문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지급기준)

제5조(여비지급기준)

[별표 1]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 3 ( 생 략 )

비고 : 1 - 3 (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정안									
[별표 2] 국의여비지급기준표 (단위: 미분화)								[별표 2] 국의여비지급기준표 (단위: 미분화)									
지급 기준 구분	행공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지급 기준 구분	월도유임	선박유임	항공 유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186	133	150	180	210	의장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금액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산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금액	1등 정액	40	가등급 205 나등급 149 다등급 118 라등급 110	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51	107	140	170	195	의원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함을 확인요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창의요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액	1등 정액	35	가등급 165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비고: 1-2 (생략)

3. (신설)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에 의거 지급한다.

# 관련법규발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② - ③ ( 생략 )

[별표 7] <개정 1999.12.31>

###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원)

지급기준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시·도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22,000	18,000

비 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1999.12.31>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미불화)

지급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위원장	1등 정액	30	169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위원장	1등 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20	120	81	130	155	180

-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개정 2001.3.20, 2002.1.4>

###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급정액	정액	정액	10,000	실비	25,000
제 1 호	1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제 2 호	1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제 3 호	2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10,000	25,000	18,000
제 4 호	3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10,000	22,000	15,000

- 비 고 :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lt;개정 2000.1.8, 2001.3.20, 2003.1.7&gt;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기목 해당자		(생	략)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생	략)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생	략)	
차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생	략)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차장, 통상교섭 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가	40	205	133
	나	40	149	99
	다	40	118	72
	라	40	100	61
동표 제2호 해당자	가	35	166	107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생	략)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생	략)	

##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 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  
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  
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와르, 콩고민주공화국, 루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 파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